



연구보고서 2023-03

PHI Research Report 2023-03

# 모두의 건강을 위한 젠더레짐

Scrutinizing the Gender Regime Concept  
for Health for All

[PHI Research Report 2023-03]

Scrutinizing the Gender Regime Concept for Health for All

[연구보고서 2023-03]

모두의 건강을 위한 젠더레짐

출판일 || 2023년 3월 21일

편집인 || 김 새 롬 시민건강연구소 비상임연구원

필진 || 김 새 롬 시민건강연구소 비상임연구원

(가나다 순) 김 진 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문 다 슬 시민건강연구소 노동건강연구센터장

문 주 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박 서 화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펴낸 곳 || (사) 시민건강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6, 2층

전화: 02-535-1848 팩스: 02-581-0339

누리집: [www.health.re.kr](http://www.health.re.kr)

전자우편: [people@health.re.kr](mailto:people@health.re.kr)

ISBN || 979-11-87195-27-6(95300)



## 차례

1. 들어가며 .....	1
2. 레짐(regime)이란 무엇인가 – 건강 레짐과 젠더레짐 .....	3
3. 젠더레짐은 어떻게 활용돼 왔나 .....	8
1) 국제정치에서 레짐 .....	8
2) 여성학에서 젠더레짐 .....	12
3) 복지국가레짐을 젠더화하기 – 젠더정책레짐 .....	14
4) 월비(Sylvia Walby)의 젠더레짐 .....	22
4. 나가며: 가능성을 모색하기 .....	30
부록 .....	33
참고문헌 .....	37

## 표 차례

표1. 세 가지 젠더정책레짐 .....	16
표2. 월비가 제시한 젠더레짐의 다양성 .....	24

## 그림 차례

그림1.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개념틀 .....	6
그림2. 국제정치에서 레짐의 구속력과 제도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 .....	9
그림3. 월비의 젠더레짐과 다른 레짐 개념의 비교 .....	27

## 글상자 차례

글상자1. 젠더정책레짐으로 바라본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	17
--	----

## 요약

이 글은 건강과 젠더를 분석하기 위한 더 넓고 관계적인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 ‘레짐’과 ‘젠더레짐’이 사용되는 기존의 방식과 쓸모를 검토한다. 여성 건강과 의료가 계속해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축소되고는 경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의 건강 지식을 실천과 더욱 가깝게 놓기 위한 이론적 도구가 필요하다. 국제정치, 여성학, 사회복지, 사회학 등의 연구에서 논의되는 레짐 개념은 그 정의와 범위, 활용이 다양하지만 총체적이고 실천을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건강과 젠더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능성을 가진다. 고찰을 토대로 우리는 레짐 개념이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고민하는 성평등한 세계를 모색하는 지식을 쌓아올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그리고 그 배경이 되었던 공동학습의 목표를 소개한다. 2장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성 요소와 건강 레짐을 비교함으로써 모두의 건강을 위한 총체적 시도로 건강 레짐의 개념적 유용성과 쓸모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젠더레짐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를 정리하였다. 젠더레짐의 정의와 쓰임은 국제 관계, 복지국가이론, 여성학 등 학문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해당 장에서는 젠더레짐의 다양한 의미와 활용을 종합하는 한편, 젠더와 건강을 고민하기 위한 “레짐 접근”의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여기에는 동성 커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포함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젠더레짐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젠더화된 관계와 역할, 규범, 정동 등의 총체로 나타나는 젠더 구조를 사회적 실재로서 포착하고 분석하기 위해 유용한 개념임을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이 글이 젠더레짐에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젠더와 건강을 형성하는 사회적 실재의 교차성을 꺼안는 사회구성체로 젠더레짐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이 글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에 걸쳐 필진이 함께 공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의 초안을 검토하고 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한국사회역사학회의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Summary

Gender, as Joan Scott has said, is both a social structure and an analytical category that shapes people's health. But how does gender integrate into the health system and its broader determinants? How can we relate the multifaceted gender relations that intersect with every dimension and level of health? As we enter the fifth year since the opening of the Gender and Health Research Center, we feel the need to adopt a conceptual framework that can guide our research and activism. In this endeavor,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applications and theoretical possibilities of the gender regime in this report. The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 1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the report and explains our purpose for collective learning. In Chapter 2, we compare the health system building blocks with the health regime and explain the conceptual advantage of the health regime in guiding our collective endeavor in health for all. Chapter 3 is our main text, which summarizes the results of our literature review on the gender regime. Definitions and uses of gender regimes differ based on varied disciplines, such as international relations, welfare state theory, and feminist studies. We try to put together the use and meaning of gender regimes in various academic projects and derive the theoretical possibility of a "regime approach" in gender and health. We also include a case study analyzing the recent verdict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bout gay couples' entitlement to dependent relationships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Finally, Chapter 4 concludes that gender regimes can be a promising conceptual tool for capturing and analyzing gender structures as social entities, which can manifest the totality of gender relations, roles, norms, and sentiments across a wide range of domains. We hope our investigation can work as an invitation to draw more attention to the gender regime, which we anticipate will develop as a social construct that can embrace the intersecting nature of social reality that shapes gender and health.

## 1. 들어가며

2019년 2월, 시민건강연구소 총회에서 젠더와건강연구센터를 새로 만들어 운영했으면 한다는 보고를 했을 때 들었던 질문이 있다. 왜 “여성 건강”이나 “성·재생산 건강”이 아니라 “젠더와 건강” 연구센터라고 이름을 정했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낙태죄 폐지 결정을 앞두고 임신중지를 둘러싼 여성건강운동의 영향을 받아 연구소에서도 이에 대한 공부와 활동을 본격 시작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던 참이니, 적절한 질문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제대로 답을 할 만큼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새로 만들어 운영할 센터의 핵심적인 테마가 특정한 지식의 대상(subject)으로 여성을 지정하는 것이기보다는, 스콧(Joan Wallace Scott)의 설명을 따라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이자 분석 범주로서 “젠더(gender)”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생각한다.

젠더와건강연구센터 운영 5년 차인 2023년까지 센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아무래도 공동의 학습이었다. 기존의 건강에 대한 지식들을 젠더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 도구들을 쌓아야 했기 때문이다.<sup>1</sup> 함께 공부하기를 자처한 사람들과 모두의 건강과 젠더의 교차를 탐색하던 중, 우리는 여러 학제와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젠더레짐(gender regime)”의 의미를 파악해보아야겠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스콧이 말한바 **젠더**가 사회를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y)라면, 레짐은 이를 둘러싼 더 넓은 배경까지를 포함해 젠더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제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유용해 보였다. 일상의 규범과 문화를 형성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제도를 통해 젠더 범주를 재생산하고, 생각하고 관계맺는 개별 인간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동시에, 구획하는 젠더-관계(gender relations)의 작동을 포착하는 사회적 구성체로서 **젠더레짐**의 가능성을 기대했다.

이 글은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의 공동학습에 참여해왔던 회원 5명이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기대와 의문을 품고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의 목적이 젠더레짐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대신 우리는 이 글에서 사회와 건강, 그리고 구조이자 기제로 젠더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젠더레짐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존의 쓰임과 의미가 어떻게 배치돼

<sup>1</sup> 젠더건강연구센터 블로그도 운영되고 있다. 다음을 참고. <https://genderandhealth.weebly.com/>

있는지를 검토했다. 젠더를 개인화된 규범이나 역할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사회·제도의 고정된 특성으로 평평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돕는 개념적 도구(conceptual tool)로 젠더레짐의 가능성을 탐색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글을 정리하기 위해 주로 활용한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이다. 먼저, 수기검색을 통해 읽기 목록을 구성하였다(부록1). 국내외 여러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져 온 레짐의 정의와 비판에서부터 젠더레짐의 정의와 작동 원리, 그리고 복지국가, 노동시장, 폭력 등에서 젠더레짐의 쓰임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젠더레짐 논의를 망라하여 훑아보았다. 보건의로 혹은 건강 영역에서 젠더레짐을 다룬 글을 찾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 가운데 하나다. 이후 함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국제정치, 여성학, 그리고 복지국가에서 젠더레짐의 활용을 추가적으로 고찰하고 또 논의했다. 마찬가지로 수기검색을 통해 추가 문헌을 찾고 검토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례 분석을 함께 시도했다.

## 2. 레짐(regime)이란 무엇인가 — 건강 레짐과 젠더레짐

프랑스어 régime에서 유래한 레짐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Strange, 1982). 일상어로 régime은 특정한 식이요법이나 운동, 삶의 양식 등으로 의사 등이 건강을 위해 환자에게 지시하는 양생법을 이 단어로 지칭한다.<sup>2</sup> 두 번째는 이 글에서 다룰 ‘레짐’으로 발전된 용어로, 일정한 규칙성, 규율, 권위, 목적에 따른 넓은 원칙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의미는 ‘양시앵 레짐’처럼 특정 개인, 왕조, 정당 등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의 상황을 지칭하는 정치적인 차원을 지칭한다.

건강 레짐(health regime)도 젠더레짐도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다.<sup>3</sup> 시민건강연구소의 회원이라면 젠더레짐보다는 건강 레짐(health regime)에 더 익숙할 수도 있다. 김창엽(2017)은 체계를 넘어 레짐으로 건강분배체계를 바라보라고 제안하는 글에서 기존의 레짐 개념이 적어도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정리한다. 이는 첫째, 공적 활동이나 정책을 설명하는 데에 정부와 좁은 의미의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비정부 또는 비공식 부분을 함께 포함하기 위한 개념으로 레짐이다. 대표적으로 도시 레짐이 그러하고, 복지국가 레짐도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둘째, 사회적 현상이나 활동을 이해하는 데에 가시적인 제도나 정책 외에도 가치와 규범, 원칙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심급으로 레짐을 활용하는 경우다. 젠더레짐과 국제 레짐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나 제도의 총체 또는 통합물로 레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빈곤 레짐, 복지 레짐 등이 대표적이다(김창엽, 2017).

그렇다면 시민건강연구소는 “건강 레짐”을 어떻게 규정해 왔을까? 녹색 건강을 위한 건강 레짐을 논의한 2012년 서리풀 논평에서는 레짐이 “규범이나 가치, 문화, 정책, 제도, 법률을 포함하며 과업, 의무, 권리를 배분하는 규칙으로 작동하는 틀”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연구(앞의 연구, 2017)에

<sup>2</sup> 의료인들에게 익숙한 레지멘(regimen)이라는 표현 역시 여기서 파생된 단어로, 식이요법에서 투약방식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건강 목표(질병 극복과 예방, 웰빙 등)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sup>3</sup> 글을 작성하던 2023년 2월 기준 구글에서 “건강레짐”과 “건강 레짐”으로 검색된 게시글은 각각 651건과 593건이고, “젠더레짐”과 “젠더레짐”을 검색하면 각 6,900여건과 7,400여건의 게시글이 검색된다. 시민건강연구소 누리집(www.health.re.kr)에서 “레짐”을 다룬 글은 36개로 대부분은 건강 레짐을 다룬 글이지만, 젠더레짐을 언급한 글도 3개 존재한다. 이 3개의 글은 모두 젠더 폭력을 다루는 글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용인하고 재생산하는 젠더레짐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따르면 건강 레짐은 “건강과 보건의료와 연관된 가치, 규범, 규칙, 정책, 법률, 제도의 총합으로 행태와 상호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틀”을 의미한다.

이후 출판된 책(김창엽, 2019)에서는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대로 건강 레짐을 제안하는 맥락을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건강 레짐은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식과 분석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개입과 변화의 주체를 개척하고, 대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다르게 모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토대로서 제시된다. 레짐 개념은 환경과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시적이고 측정가능한 유형의 요소뿐만 아니라 무형의 요소들을 지식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실재로써 주목하게 해주며, 다수의 정책이나 제도, 문화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김창엽, 2019: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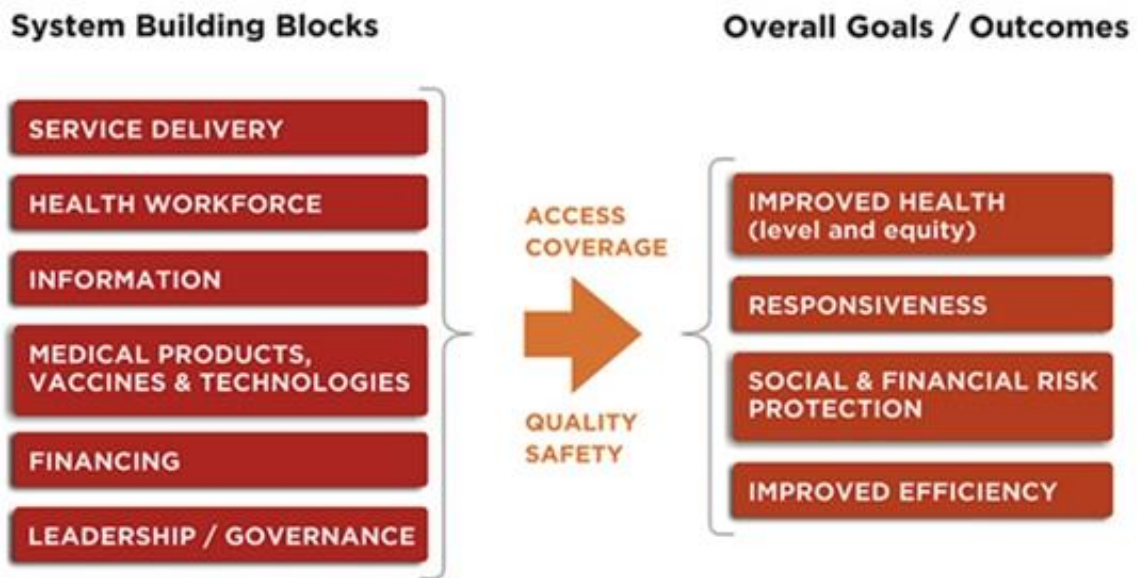
건강 레짐 개념에 따라 건강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의 총체로서 바라보고 있기에 시민건강연구소는 건강을 둘러싼 규범, 가치, 문화를 고민하고 기존 정책, 법률, 제도에 내재한 문제들을 짚어 왔다. 발전주의적 국가개발 논리와 국력으로 건강이라는 우생학적 함의가 짙은 정치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 변화의 주체를 넓히기 위한 시도도 레짐으로서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과 달아 있다. 건강과 관련한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가 선호나 선택을 넘어 정치적 요구와 의지로 전환될 수 있게끔 틈새를 메우는 지식을 지향하는 입장 역시 건강레짐의 관점에서 포괄된다. 이렇게 총체적인 접근으로서 건강 레짐의 관점을 채택하면 변화의 주체가 국가에 한정될 리 없고, 개입의 도구와 전략 역시 좁은 의미의 정부 정책으로 국한해서 파악하는 방식이 실제의 가능성을 제약한다는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요약하면 우리에게 건강 레짐은 다양한 개입의 공간과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건강과 보건의료를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도구상자(toolbox)로서 의미가 있는 셈이다.

반면 젠더레짐은 국가기구에 의한 공적 제도로 작동하는 체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레짐”을 활용하는 입장과는 다소 다른 목적에서 호출되어 왔다. 버틀러(Judith Butler)의 말대로 규범과 규율의 장치(apparatus)로 젠더를 호명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개인의 속성이자 사적 관계에 따른 결과로 치부하는 경향에 저항하는 일이었다. 젠더레짐은 젠더를 논의할 때마다 반복되는 개인화 경향을 극복하고 젠더 개념이 담고 있는 총체적 관계를 강조한다. 우리는 기회와 제약의 구조를 형성하는 역사적·문화적·제도적 차원으로 젠더(구조)를 다루고, 시대, 국가, 사회라는 시공간적 배경과 위계구조와 뒤얽혀 나타나는 젠더를 포착하기에 레짐 개념의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학에서 익숙한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개념들을 예를 들어 보자. WHO(2007)은 보건의료체계가 ▲서비스제공체계, ▲보건의료인력, ▲정보, ▲의약품·백신·기술, ▲재정, ▲리더십·거버넌스의 여섯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고 본다(그림 1). 이 개념들은 모두의 건강을 증진하고 형평적으로 건강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로 둔다. 자원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성, 질, 안전성을 개선하는 일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가치와 원칙은 1978년 알마아타 선언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2000년 세계보건보고서, 2002년 세계보건기구의 젠더정책에 관한 사무총장 성명서 등 인권과 젠더 관련 세계보건기구의 공약에 근거한다(WHO, 2007). 이 여섯 가지 구성요소는 빈곤퇴치와 모자보건을 목표로 했던 새천년개발 목표(MDG) 시기 여러 국가의 보건당국 조직체계와 꼭 닮았다. 건강을 향상하고 사회경제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행동의 주요 주체를 보건사업 및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와 국가 보건부 관료를 주요 독자로 상정했다는 뜻이다.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이라는 점에서 널리 활용되기는 하지만, 이 개념들은 체계 내 구성요소들을 평평하게 나열하는데 그친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실제로 체계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지우고, 시설중심 접근을 중심에 둬으로써 지역사회를 주변화하게 된다는 점 등이 핵심이다(Sacks et al., 2019). 더 나아가 이와 같이 국가정책이나 원조사업의 하향식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해는 건강을 둘러싼 문화와 규범을 바꾸고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를 지지, 촉발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를 경유해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을 택해온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사회의 국민국가중심 보건의료체계 접근의 내재적 한계인 셈이다.

## The WHO Health System Framework



[그림 1]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개념틀(De Savigny & Adam, 2009)

다른 모든 건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성건강과 재생산은 특히나 공식의 법·제도 외에도 암묵적 규범과 규칙, 가치와 정동의 규율을 강하게 받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틀을 중심으로 사안을 파악하였을 때에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상상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젠더 관점의 건강 연구를 위해 “젠더레짐”을 다룬 기존의 연구를 학제에 따라 검토하고 정리했다. 보건의료체계라는 개념틀을 공유하며 젠더와 건강을 다루고자 했던 우리의 의도와 필요<sup>4</sup>가 “레짐”을 다루는 기존의 문법과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 알아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명확하게 개념화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수준에서 여성 건강을 규율하는 제도적·정치적·정책적 차원의 배열을 포괄하는 모종의 “여성 건강 레짐”을 발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글을 통해 젠더레짐을 다룬 모든 학제의 논의를 총망라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sup>4</sup> 이런 관점에서 이 이슈페이퍼의 작성에 참여한 저자들이 시도했던 작업은 아래 문헌들을 참고.

- 국내 보건학 지식생산의 위계적 성차 탐색(김진환, 김새롬, 박금령, 이준희, 김정우, 2019)
- 경제위기와 고용조건에 따른 자살위험 양식의 젠더격차 분석(문다슬과 정혜주, 2018)
- 아동건강에 미치는 양육자별 시간자원 투입의 차이 분석(문주현과 권순만, 2020)
- 성인지적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과 강조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Kim, Kim, Park, Kim, & Kim, 2020)
-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틀을 이용해 성재생산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 분석(김새롬, 2021).



현실적 쓸모와 필요를 중심으로 탐색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충실하게 젠더레짐을 검토한 결과임을 미리 밝혀둔다.

### 3. 젠더레짐은 어떻게 활용돼 왔나

#### 1) 국제정치에서 레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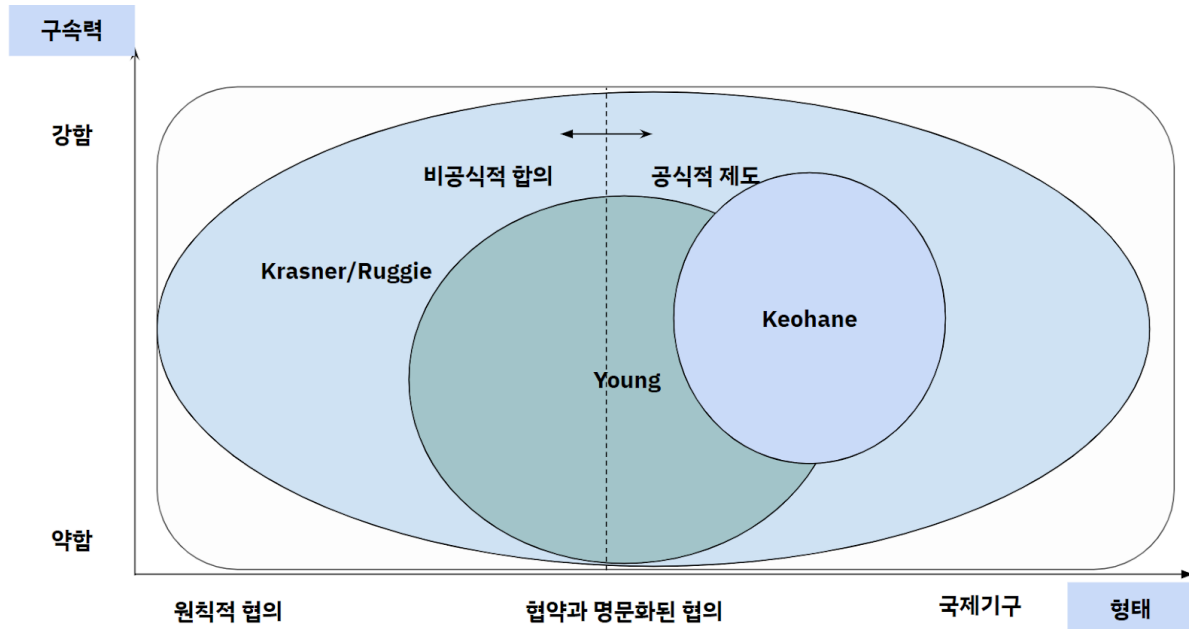
##### (1) 레짐의 정의와 활용

1980년대부터 레짐 이론을 광범위하게 응용해온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도 레짐은 여전히 모호하고 가변성이 높은 개념으로 남아있다. 우선 가장 광범위하게 합의된 정의는 레짐 이론의 대표격인 학자 크라스너(Krasner, 1982)가 제시했다. 이 때 레짐은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사항을 수렴시키는 원칙, 규범, 규칙, 의사 결정의 절차(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round which actor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issue, area)(Krasner, 1982:185)"로 정의된다.

여기서 레짐은 '제도(institution)'와는 구분되는 총체적인 매커니즘을 의미한다. 제도가 "역할을 명령하고, 활동을 규제하며, 기대하는 바를 규정짓는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인 지속적이고 상호연관된 일련의 규칙들"(Keohane, 1989:3)이라면, 레짐은 규칙들이 제도화돼 나타난 하나의 기초적인 합의다. 즉, 국제제도에서는 '체제'가 행동을 조정한다고 보지만 국가들의 개인적인 이익 계산과 복잡한 효용함수를 고려하면 체제, 기술, 경제구조를 넘어서는 수준의 광범위한 규범과 구조가 존재하고, 이 구조가 모종의 레짐을 형성하며 기존의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뜻이다(Krasner, 1982:191-192). 레짐 이론은 국제정치학에서 냉전을 막지 못한 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반성과 초국가적 금융질서가 혼재해 나타난 1970년대 신자유주의 학파로부터 시작해 국제정치에서 제도 혹은 합의된 기구 이상의 광범위한 협의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학자별로 그 정의와 용례가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레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는 각 학자들이 국제 제도 안에서 레짐을 어디에 위치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그림 2). 크라스너는 레짐을 총체적인 매커니즘(Krasner, 1982)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사건을 만드는 원인이나 결과, 결과를 변화시키는 변수 등 의미로 쓰인다. 이와 같은 용례는 정치학자들이 논의하는 다양한 레짐 정의 중에서도 가장 넓은 범위를 지칭한다. 레짐이 가시화된 제도 혹은 기구가 아닌, 국제사회의 '합의'에 가까운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레짐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도 국제사회의 동의와 질서 외에 특별한 요소가 없기에 국제기구 등 상설화된 제도만큼이나 안정적인 모양새를 띤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현재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인 국제연합(UN)을 가능케 한 전후 레짐을

들 수 있다. 이는 1945년 이후 국제사회가 미국이라는 하나의 강대국을 기준으로 한 국제질서에 폭넓게 합의하고, 일종의 강건한 레짐을 구축했기에 가능한 일로 볼 수 있다. 크라스너의 정의는 모호하나 현재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용례다.



**[그림 2] 국제정치에서 레짐의 구속력과 제도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도식화

이후 발전한 레짐에 대한 정의는 상당 부분 사회학적 시각을 반영한다. 크라스너 이후 레짐 이론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킨 영(Oran Young)과 코헤인(Robert Keohane)은 레짐이 사회적 제도로 개념화되어야 한다고 봤다(Duffield, 2007; Young, 1980; Keohane, 1984). 또, 영은 국제사회에서의 ‘제도’를 "기대가 수렴되는 인식된 행동 또는 관행 패턴 (Young, 1983:93)"으로 보고, 레짐은 이와 같은 제도 속에서 이뤄진 활동이자 “특정 활동(또는 의미 있는 일련의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 제도(Young, 1980:332)”라고 규정했다. 즉, 제도가 국제사회 안에서 수렴하면서 행위자 간 진행되는 활동으로 레짐을 정의한 것이다. 또, 영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레짐은 정치적, 경제적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의 논의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다. 이와 같은 논리로 국제 레짐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비롯한 현행 국제경제체제부터 핵확산방지조약 등의 군비통제 합의, 환경에 관한 국제조약, 주권국가들의 영역범위와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조약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코헤인 역시 1945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나타난 GATT체제, IMF를 위시한 국제경제체제가 레짐의 일종으로 파악했다(Keohane, 1984).

코헤인과 나이(Joseph Nye)는 레짐을 “지배 체제의 집합” 이라고 봤고, 레짐 안에는 “행동을 정규화하고 그 효과를 통제하는 규칙, 규범 및 절차의 네트워크”가 포함된다고 분석했다(Keohane & Nye, 1977:19). 이들이 보기에 레짐은 국가들에 의해 합의된 명시적인 규칙을 지닌 제도이며, 실질적으로 행동을 구속하는 형식이어야 레짐으로서의 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헤인은 엑슬로드와 함께 레짐의 안정성이 국제협력에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봤다(Axelrod & Keohane, 1986). 국제협력은 체제의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구조에 의해 성공과 실패 여부가 판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상구조가 행위자 자신들의 인식(perception)에 의해 결정되고, 인식 안에 국제레짐에 대한 믿음 등 '총체적인 체제에 대한 신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Axelrod & Keohane, 1985). 이렇게 이들은 관습 등의 비공식적인 제도를 레짐 안에 포함하는 크라스너, 영의 논의에 비해 레짐을 좁게 정의한다. 요약하면 코헤인의 '국제제도' 안에는 국제기구와 레짐, 관습이 포함되며 레짐은 국제기구와 관습 사이에서 나타나는 기초적인 형태의 구속력 있는 규율이다.

이렇게 정치학에서의 “레짐”은 행동과 그 효과를 통제하는 규칙, 규범, 절차의 네트워크(networks of rules, norms and procedures that regularize behavior and control its effects)로서 속성을 가지며 그 규모와 범위, 쓰임이 매우 유연하다. 그리하여 레짐은 종종 군대, 전쟁, 안보, 무역, 경제, 복지국가와 같이 다양한 단어와 결합된 형태로 활용되고, 동시에 그런 모호함 및 임의성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정치학자 Strange(1981)는 국제관계에서 레짐 분석이 다소 미국적 유행이라고 비판하며 그 규정이 부정확하거나, 정적이거나, 가치부과적인 특성을 가지기에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데에 유의미한 틀인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하며 특정 레짐을 일반 이론화해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제정치에서의 '레짐'의 활용은 건강 혹은 젠더레짐과 비교할 때 그 활용의 범위가 실천적이기 보다 이론적·규범적 차원에 머무르고, '사람 중심적 시각'이 부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국제정치 학자들 사이에서도 학파들 간 레짐을 정의하는 범위가 달라 아직 이론적으로조차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 (2) 젠더, 불평등, 국제관계

국제정치에서 레짐 개념은 현실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지만, 여전히 불평등을 자연시하는 이해를 공유한다. 대체로 국제정치·국제관계이론은 정부적 통치가 없는 흡스적 세계관(Keohane 1984:71; Axelrod & Keohane 1985:256-257)을 따른다. 이 세계관에서 국제정치의 유의미한 행위자는 오로지 국민국가(nation state)이며, 이러한 완고한 입장은 국제관계이론이 젠더, 빈곤, 환경 등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범위의 초국적 레짐을 구속력 있게 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국제정치 담론 안에서 ‘레짐’은 주로 여러 국민국가가 합의한 원칙과 규범을 의미하며, 국민국가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평등은 국제정치에서 문제로 설정되지 못하고 그대로 확대·재생산된다. 개별 국민국가에서 젠더, 장애, 빈곤 등 다양한 불평등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에 비해 국제정치 차원의 이들 영역이 초국적 의제로 구속력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동향 역시 위와 같은 관점을 반영한다 하겠다.

그럼에도 열려있는 가능성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일부 영역에서 기초적인 “성평등 레짐”에 기반한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제연합이 1975년 멕시코시티를 기점으로 코펜하겐(1980), 나이로비(1985), 베이징(1995), 뉴욕(2000) 등에서 개최한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다.<sup>5</sup>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여성과 빈곤, 교육, 건강 등 현재 젠더와 불평등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했고, 국제사회는 이로부터 25주년이 되는 2020년 새로운 선언(Political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을 채택했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젠더와 불평등 해결을 위해 각국이 합의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했고, 이를 통해 레짐의 규범적인 힘이 일정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였다. 국제적 성평등 레짐이 각 국민국가에 대해 강제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국 정치에서 일정하게 규범적인 힘을 발휘하며 의사결정의 준거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레짐이 활용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레짐은 법률, 정책, 체계 등 기존의 정치, 주로 국민국가의 공식 통치체를 경유해 제도화, 구체화된 원칙과 규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더 넓은 영역의 사회적 실체를 의미화하고 그 작동을 논의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sup>5</sup> UN Women, “World Conferences on Women”



이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가 UN보다 앞서 야간노동에 관한 협약(Night Work Convention, 1919) 등을 통해 여성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준<sup>6</sup>을 설정한 일(Kardam, 2002) 역시 국제 성평등 레짐의 작동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지역적 층위에서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짐도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평의회에서는 1990년 이후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구현해 왔고, 이는 2011년 5월 11일 유럽 13개국이 서명한 "여성 및 가정 폭력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약칭 이스탄불 협약, Conven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으로 이어졌다.<sup>7</sup>

## 2) 여성학에서 젠더레짐

여성학과 페미니스트 정치학에서 젠더레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활용돼 왔을까?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자이자 트랜스섹슈얼 여성인 코넬(Raewyn Connell)과 피어스(Rebecca Pearse)는 주어진 맥락이나 제도, 조직 내에서 젠더화된 사회 관계가 시공간에 따라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젠더레짐**이라고 부른다. 이 때의 젠더레짐은 각 조직의 특성을 지칭하므로 중간(meso) 수준을 지칭하는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코넬은 호주의 공공부문 작업장의 젠더레짐을 분석한 본인의 조직 단위 연구를 예시로 든다. 일터에서 관리자와 기술노동자 대부분이 남성인 반면 사무직과 서비스직 노동자 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는 양상이나 경영과 자원배분에 대한 업무는 남성에게 돌아가는 한편 이들이 결정한 내용을 수행하며 일선 상품 또는 노동자와 접촉하는 업무가 여성에게 부과되는 패턴이 조직의 젠더레짐을 보여준다는 식이다. 이 책에서는 특정한 조직의 젠더레짐은 더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넓은 패턴의 일부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고 재생산되는 것이기에 이런 넓은 패턴이 사회의 “젠더 질서(gender order)”를 구성한다고 말한다(Connell & Pearse, 2015:151-153)

코넬과 피어스가 규정하는 젠더레짐과 젠더 질서는 모두 젠더가 일련의 사회적 관계, 즉 사람·집단·조직이 연결되고 분리되는 방식과 결부돼 작동하고 있음을 추상화하는 개념이다. 젠더라는 사회적 실재가 ‘구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젠더레짐이나 젠더 질서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광범위하게 시공간을 넘어 존재해야 한다. 남호주의 공공부문 작업장에서 코넬이 확인한 “젠더레짐”과 유사한 형태의 배치가 한국의

<sup>6</sup> ILO, “C004 – Night Work (Women) Convention, 1919 (No. 4)”

<sup>7</sup> Council of Europe, “Key facts about the Istanbul Convention”

솔한 공공기관과 일터에,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조직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코넬이 관찰한 젠더레짐, 더 나아가 이와 유사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구조로서 젠더가 실재한다고 여기게 된다.

코넬과 피어스의 젠더레짐은 국제정치학이나 복지국가연구에서 말하는 레짐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 미시·중간 수준의 특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책의 역자인 유정미는 레짐 개념이 등장했던 장을 요약하며 미시에서 거시 수준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는데, 이는 젠더 배열(arrangement), 젠더 패턴(pattern), 젠더레짐(regime), 젠더 질서(order), 젠더 관계(relations), 젠더 구조(structure) 순이다. 이 중 레짐은 개인이나 행위를 넘어 “조직의 특성”으로 여겨지며, 더 오랜 기간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는 젠더 질서나 사회적 실체(개인/집단/조직)들의 연결과 분리를 지칭하는 젠더 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개념으로 위치지어져 있다(Connell & Pearse, 2015:348).

이러한 경향은 코넬의 정의를 인용하며 젠더레짐을 활용하는 여성학 연구들에서도 반복돼 확인된다. 예를 들어 Morris(2009)는 젠더레짐을 젠더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만들어나가는 젠더 관계와 실천의 배열에 따라 나타나는 생애경험으로 규정하면서 폭력 가구 젠더레짐(abusive household gender regime)을 개념화했다. 임춘희와 송인화(2010) 역시 한국 농촌 마을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참여관찰연구에서 젠더레짐을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집단·공동체에서 젠더에 의해 통치되는 방식”으로 규정하며 비합리적이며 성별 불평등에 기초한 가부장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전통적 젠더레짐을 합리적 젠더레짐과 대비시켰다(임춘희와 송인화, 2010). 코넬의 젠더레짐을 부르디외의 아비투스과 연결해 아비투스의 젠더화된 양식을 설명한 Mennesson(2012)의 연구에서는 코넬의 젠더레짐 개념이 사회적 실재를 구성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인적 요인보다 우선시하지 않는 접근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며 성차가 구성되는 정적인 이론보다는 젠더 역동(gended dynamic)과 그 재생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Mennesson, 2012).

### 3) 복지국가레짐을 젠더화하기 - 젠더정책레짐

#### (1) 복지국가레짐에서 젠더 고려하기

복지국가 연구에서 젠더의 결합은 레짐 그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남성 편향적인 기존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했다(Ciccia & Sainsbury, 2018). 국가와 여성의 관계를 고민하는 여성 연구자들은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가 여성을 ‘(사적) 복지 제공자’로 ‘모성’에 한정하거나, ‘정책 대상’으로 복지국가에 의존하는 무력한 존재로 그린다는 점을 비판했다(Wilson, 1977; Lewis, 1997). 이들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일하며, 복지를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복지 급여의 주체임을 설파한다. 실제로 여성을 복지국가의 ‘정치 행위자’로 위치짓는 작업은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가 놓치고 있었던 사적 영역과 재생산(reproduction) 영역을 포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Peattie and Rein, 1983; Hernes, 1987). 또한 복지국가와 여성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남성에 사회적으로 유리한 기회와 자격, 권위 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을 배제하는 복지국가가 어떻게 가부장적 성별 구조를 재생산하는지를 확인하고, 기존 지식이 몰젠더적 복지국가를 어떻게 승인하고 재생산하는지를 포착할 수 있게 해 줬다(Nelson, 1990; 장지연, 2004).

젠더레짐은 복지국가레짐 논의의 몰젠더적(gender-blind) 전제를 문제시하며 그 대안으로 등장했다. 비교복지국가논의에 대한 본격적인 페미니스트 비판은 에스핑 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레짐에 대한 Lewis(1992)와 Orloff(1993)의 문제제기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핑 앤더슨은 유럽 자본주의 국가가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차이, 그리고 분배 결과로 나타나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계층화(stratification) 정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이상형(ideal type)으로 구분했다(Esping-Andersen, 1990). 그러나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에스핑 앤더슨의 레짐 구분은 ① 핵심 복지제공자로 가족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간과하고, ② 유·무급 노동의 불평등한 성별분업을 누락함으로써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당연시하며, ③ 사회 분배를 주로 남성에 의해 수행되는 유급 노동과 연계함으로써 생계부양자 남성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가부장적

구조 내 피부양시민(여성과 아동)<sup>8</sup>의 사회권을 논의하기 어렵게 만든다(Lewis, 1992; O'Connor, 1993; Orloff, 1993).

몰젠더적 복지국가 전제에 대한 비판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젠더 관계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비교복지국가 논의에서 젠더레짐은 별도의 이론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정치학자인 세인즈베리(Diane Sainsbury)는 보다 거시적 층위에서 복지국가레짐과 관계 속에서 젠더를 포착하기 위해 레짐 개념을 활용한다. 세인즈베리는 레짐을 기저의 기대를 형성하는 규범과 규칙의 복합체(Complex of rules and norms that create established expectations)라고 설명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젠더레짐**을 두 성별에게 서로 다른 권리와 과업을 배분하는 젠더 관계에 대한 규칙과 규범으로 구성되는 것(Gender regime consists of the rules and norms about gender relations, allocating tasks and rights to the two sexes)으로 정의한다. 세인즈베리는 **젠더정책레짐(gender policy regime)**을 젠더레짐과 상호교환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때 젠더정책레짐은 정책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관계를 만들어내는 규범과 규칙의 논리(Gender policy regime entails a logic based on the rules and norms about gender relations that influences the construction of policies)를 의미한다. 젠더레짐이 젠더 관계를 구성하는 규범과 규칙 일반을 의미한다면 젠더정책레짐은 정책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과 규칙을 지칭한다. 서구 국가들에서 복지국가의 발전과 의의를 젠더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세인즈베리의 논의에서 젠더레짐은 곧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관계의 구성요소들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교환 가능해진다.

세인즈베리가 제안하는 젠더정책레짐은 여성의 위치를 단순히 노동자로 설정하는 기존 복지국가레짐 담론을 문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생각하기에 젠더를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여성을 노동자로만 여기는 이론과 개념들은 다음의 사실들을 누락한다. 첫째, 노동자가 된 여성의 위치는 노동자 남성의 위치와 동일하지 않다. 둘째, 여성의 무급가사노동과 가정 내 노동이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고용상태에 따라 획득하는 권리(entitlement)에만 주목한다면 여성들이 아내나 모성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 간과된다. 세인즈베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젠더가 국가의 정책과 법률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표1에서 확인할 수

<sup>8</sup> 여기에서는 여성과 아동을 지목하나, 노동복지(workfare) 원리에 따라 아파서 일할 수 없는 사람, 노인과 장애인, 동성 파트너 등 생산노동에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직접적인 복지의 자격이 없는 피부양시민의 범위는 한결 더 넓음이 자명해 보인다.

있는 젠더정책레짐의 세 가지 분류는 이런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복지의 사회적 분배가 달라지는 방식을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 권리가 주어지는 조건, 급여 수혜자, 조세 납부 방식, 고용과 임금정책, 돌봄 노동과 생산에서의 차이로 유형화하고 각각을 상호구분되는 젠더정책레짐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분리된 젠더 역할 모델, 개별 생계부양-돌봄자 모델로 이론화했다(표1).

**[표 1] 세 가지 젠더정책레짐(Sainsbury, 1999)**

레짐 특성	남성 생계부양자 Male Breadwinner	분리된 젠더 역할 Separated gender roles	개별 소득자-돌봄자 Individual earner-carer
이데올로기	노동의 엄격한 성별 구분  (남편) 임금소득자 (아내) 돌봄제공자	노동의 엄격한 성별 구분  (남편) 임금소득자 (아내) 돌봄제공자	공동업무분담  (부) 소득자-돌봄자 (모) 소득자-돌봄자
권리	부부 사이에 불평등	성역할에 따라 다름	평등
권리의 조건	생계비 보존 원칙	가족 책임	시민권 또는 거주권
급여 수혜자	가구주, 피부양자에 대한 추가 급여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 돌봄제공자인 여성	개인
조세	공동조세,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	공동조세, 남녀 모두에서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	개별조세, 동일한 세금경감
고용과 임금 정책	남성 우선	남성 우선	양성 평등
돌봄생산	주로 민간	주로 민간	강력한 국가 개입
돌봄노동	무급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일정한 유급 보수	가정 내 돌봄과 사회적 돌봄에 대한 유급 보수

세인트베리의 젠더레짐은 코넬 등 여성학 연구자들과 비교해 사회 구조로서 젠더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 층위를 다루는 한편, 국민국가를 주체로 설정하는 국제정치 논의와 비교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층위를 다룬다. 에스핑 앤더슨이 베버(Max Weber)를 인용하며 복지국가레짐을 한 국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실증적 구분(empirical typology)보다

이상형(ideal type)이라고 여겼던 것과 유사하게, 세인스베리가 제안하는 젠더레짐 역시 그와 유사한 심급의 이론적 구성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인스베리가 말하는 젠더레짐은 실제 사회에서 그에 해당하는 현상이 재현, 실증됨으로써 의의를 가진다기 보다 어떠한 젠더레짐의 원형(prototype)을 결정화(crystalize)함으로써(Rice, 2012) 그 작동 방식과 논리를 포착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근래에도 젠더정책레짐 개념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① 사회 분배(social provision)의 주체로 가족과 시민사회의 역할, ② 사회 분배의 계층화 효과, ③ 사회 분배 자격의 원칙(가족 관계 및 결혼 상태 등), ④ 유급 노동에 대한 접근권(적극적 권리로서의 시민권)의 네 가지 차원을 결합, 변용한 형태의 젠더레짐이 제안된 바 있다(Cicca & Sainsbury, 2018).

### [글상자 1] 젠더정책레짐으로 바라본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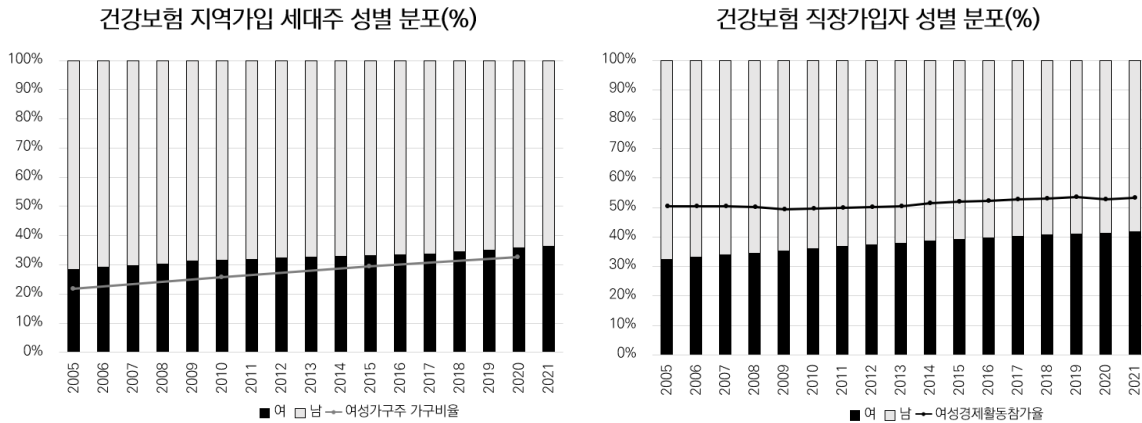
한국의 건강보험은 고용관계에 기반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부양자로서 '가입' 자격은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가입자와 법적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급여 혜택 및 그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런 제도 속에서 법적 가족 관계는 가부장제에 기댄 이성애 정상가족을 상정한다. 혈연 또는 이성 간 결합관계에서 벗어난 관계는 법적 가족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건강보험의 가입과 보장에서도 마찬가지다. 2021년 2월, 한 동성부부가 건강보험공단이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우보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동성부부인 이들이 처음 서류를 제출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은 부양자-피부양자 관계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동성결합 배우자 피부양자 인정 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자 공단은 8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동성 배우자에 대한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바꾸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2019년 10월). 이에 대해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 동성 간 결합을 사실혼 관계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2022년

1월). 하지만 2023년 2월 2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차별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이 판결은 보다 다양한 가족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건강보장의 범위를 넓히며, 사회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가족 관계를 다르게 해석하여야 마땅하다는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젠더정책레짐 관점에서 이 사례를 바라보면 생계부양자로 가구주에 대한 급여 보장과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 없이 인정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조건을 결정짓는 젠더 관계의 작동 방식과 논리에 주목하게 된다. 건강보험은 가구를 중심으로 피부양의 관계를 넓게 인정해왔지만 이는 남성과 여성, 주로 생계부양자 남성과 피부양자 여성과 아동, 노인 등 부양가족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부장 가족의 모습을 전제로 한다.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이성의 결합인 경우 생계부양을 하지 않는 구성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인정하지만, 동일하게 생활-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동성부부에서 생계부양자-피부양자로서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을 관습적으로 제도에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보험과 같은 주요한 사회보장제도들이 이성애 가족제도를 지탱하는 제도로서 기능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자. 아래 그림은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확인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 가구주의 성별 분포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서 여성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가구에서 남성이 생계부양자이자 가구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고, 여성들의 일은 종종 남성 생계부양자의 소득활동을 보조, 보완하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는 노동을 자격으로 하는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비정규 직종에서 일을 하고, 같은 비정규직에서도 여성들이 더 많이 일하는 업종(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률이 더 낮다(한겨레, 2016.11.01).



참고: 여성가구주 가구비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여성이 가족의 생계 책임을 맡고 있는 가구 비율임; 여성경제 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전체 여성인구 중 여성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가 차지하는 비율임;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주와 직장가입자 성별 분포는 전체 세대주 및 가입자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는 순서대로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참고.

세인트베리의 젠더정책레짐의 용어로 설명하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하는 제도 설계는 한국에서도 노동자로서 여성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근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스스로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하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남성 생계부양자의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사회보험 가입 없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득이 크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은 국가와 노동자, 고용주 삼자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가벼운 노동이 되기 더 쉽다. 문제는, 이 때의 “합리적 선택”이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구성하는 가족이 안전과 생계를 보장하는 유효한 테두리인 상황이 유지되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라는 성별역할구분이 모두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그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부권적 노동복지를 사회안전망의 원칙으로 활용하는 국가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따른 복지 레짐, 노동시장에서의 지속되는 완전한 성별 격차가 생계를 중심으로 종속적인 젠더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구성하는 셈이다.

만약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이 “개별 소득자-돌봄자” 모델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는 부양자-피부양자 제도 없이, 모든 국민이 각자 개인의 자격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회보험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근로가 불가능한 인구집단의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지원하는 평등한 제도가 있다는 가정 하에 여성과 남성의 사회보험가입률의 격차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부양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니, 이 경우 동성부부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과 관련한 차별은 애초에 발생할 수 없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젠더정책레짐을 통해 공-사를 넘나드는 성별에 따른 노동분업 및 이에 수반되는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성애 정상가족에 대한 특권적 인정 및 분배가 유지, 정당화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젠더정책레짐에 대한 이 논의는 현실에서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건강보험급여를 받음)을 부인하거나, 보다 평등한 젠더 관계를 전제로 삼는 개별 소득자-돌봄자 모델이 바람직하기에 지금 당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님을 짚어 둔다. 우리는 다만 이 사례를 소재 삼아 건강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젠더정책레짐이 쿼어 정치와 접합(articulation)하는 양식, 그리고 그 효과와 의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 (2) 젠더정책레짐의 활용과 한계

복지국가레짐이 이론화된 이후 이들 유형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거나, 유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경로의존성을 살펴보거나, 또는 탈상품화 및 계층화 수준이 건강 등 결과변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젠더레짐 역시 이론적 구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 작업들이 다수 진행됐다. 대표적인 방식이 젠더레짐에 따라 각국의 성평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인데, 이 때의 성평등은 사회 정책의 탈가족화(예.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등)(Sainsbury, 1996; Esping-Andersen, 2009, Guo & Gilbert, 2007; Orloff, 2009),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예. 여성노동시장 참여율, 고용률)(Huber & Stephens, 2000; Kushi & McManus, 2018; Mandel & Semyonov, 2006; O'connor, 1993)등으로 흔히 조작화된다. 보건학 영역에서는 주로 성별에 따른 건강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젠더(정책)레짐을 활용한 사례들이 확인된다(Dreger et al., 2016; Chung et al., 2013; Padrosa et al., 2022).

국내 연구에서도 젠더레짐은 주로 국가 정책에서 젠더 관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분석하고, 분류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됐다. 대표적으로 젠더정책레짐을 소개한 원숙연(2003)은 한국의 젠더정책레짐을

Lewis(1992)의 강한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 모델로 유형화하며 이에 더해 동아시아의 유교적 가족주의가 국가정책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미와 류연규(2013)는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을 선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 젠더레짐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서로 다른 젠더레짐을 가지는 한국, 스웨덴, 독일에서 성역할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석재은(2012)은 한국 연금제도가 젠더레짐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해 온 양상을 검토하여, 젠더레짐을 젠더몰이해 관점, 젠더차이 관점, 젠더 동등 관점, 젠더 통합 관점(결과적 젠더 평등)으로 구분, 정의했다. 1998년 전형적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전제로 젠더몰이해적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1998년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흔들리는 경제적 배경 속에서 젠더인지적 시도(분할연금 도입)가 이뤄졌으며, 2007년에는 젠더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출산연금크레딧, 재혼시에 분할연금 유지)이 도입되고 젠더 통합 관점의 단초(기초노령연금 도입)가 채택됐다는 설명이다.<sup>9</sup>

복지국가레짐의 젠더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젠더레짐은 복지국가의 젠더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 체계적 관계를 포착한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여전히 여러 한계를 지적받고 있기도 하다. 먼저, 젠더정책레짐은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가족 안의 젠더 관계만을 고려한다(Brush, 2002; Walby, 2004). 가족 내 여성이 가정주부인지, 아니면 노동자인지에 대한 차이에 주목할 뿐, 이성에 정상가정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의 상황을 포착할 여지가 없다. 또한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필수 돌봄을 가정 내 여성의 (유무급)노동으로 회피한다는 점 역시 제한점이다(Ciccio & Sainsbury, 2018). 여성은 물론 모든 시민이 임금노동자가 될 권리뿐만 아니라 부모가 될 권리(부모권 혹은 양육권)(장지연, 2004), 더 나아가 서로 존엄하고 평등하게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돌봄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김희강, 2018)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 정치를 형성하는 권력 관계와 투쟁을 고려하지 못하는 틀이라는 비판 역시 고민해볼 만하다. 최근 정치 행위자로 여성, 성별화된 배분(가정 내 협상력,

<sup>9</sup> 물론적으로 논의될 때가 많은 연금제도를 성별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유익한 시도이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 “레짐”이라 명명한 분석들이 복지국가논의에서 활용되곤하는 레짐과 동일한 심급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 개발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는 성평등 전략 연속선(gender equality continuum)의 단계별 접근을 각각의 젠더레짐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개별 정책의 변화 흐름을 젠더정책레짐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 도입 과정이 우발적 임의적일 수밖에 없는 개별 정책을 “레짐”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가질까? 정책들의 조합을 레짐으로 부호화하는 것이 대체로 보다 평등한 젠더레짐으로 나아갔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와 공공정책의 관점, 입장, 규범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젠더 몰이해 관점과 젠더 차이 관점, 젠더 통합 관점의 “개념적 연속선”을 시계열적 흐름에 따른 정책의 필연적인 진보처럼 놓이게 되는 것의 문제도 남아 있다. 기존의 성평등 전략 연속선의 “접근(approach)”을 “레짐”으로 확장하여 얻을 수 있는 이론적 기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결혼, 성별 분업 등), 생산-재생산 선호 등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인즈베리 등 복지국가이론에서 출발한 젠더(정치)레짐 논의들은 주로 기저의 이념형적 구분을 연역적으로 부과하거나 검증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들 구분과 정치적 역동과의 접점이 넓지 않다. 젠더레짐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보편 이론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복지국가의 성편향을 넘어서기 위한 젠더정책레짐의 경우 보다 정치한 활용 여지를 모색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기존의 이론형 구분의 틀을 답습하는 젠더정책레짐을 보다 관계적이고 비공식적이며 규범적인 영역을 포괄하기 위한 “레짐”의 활용법에 포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4) 월비(Sylvia Walby)의 젠더레짐

상술한대로 레짐 개념은 총체를 지향하지만 특정한 차원을 다루거나 관심을 두는 특정 제도의 집합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제정치학에서는 국제 질서 안에서의 정치체(주로 국민국가) 간에 관찰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론에서는 개별 국민국가의 복지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배열<sup>10</sup>을 설명하기 위해 레짐 개념을 활용한다. 개별 젠더레짐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가 다층적 차원에서 생활세계를 결정(determination)하는 젠더 관계를 논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젠더레짐에 대한 초기 논의들은 다른 학제에서의 레짐 논의가 갖는 한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Walby(2004)는 기존의 젠더레짐의 문제를 ▲단일 차원 접근 ▲상부구조 접근 ▲본질주의 접근으로 요약한다. 이 비판은 기존의 젠더레짐이 계급으로 모든 문제를 설명하려 들었던 맑시즘의 문제적인 접근을 반복했다는 주장으로도 읽을 수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단일 차원 접근 문제는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아내 또는 엄마로 환원해 가족이 아닌 젠더 관계를 사상하거나, 젠더레짐을 구성하는 젠더 규범 또는 성평등 규범을 젠더레짐과 같은 것으로 상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상부구조 접근은 젠더불평등을 견인하는 핵심 기제로 젠더를 지목했지만 다른 구조와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젠더 관계를 이론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짚는다. 흑인 여성은 흑인 남성과도 다르고 백인 여성과도

<sup>10</sup> 레짐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배열은 alignment, constellation, configuration 와 같은 개념으로 흔히 설명되며 한국어로는 배열, 배치, 형태, 정렬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결합(intertwining)해 총체로서 작동하는 규범-제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적절한 번역어에 대해서는 학술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르다는 크렌쇼(Kimberle Crenshaw)의 말처럼 젠더불평등은 젠더 관계와 다른 불평등 구조와 상호작용하여 나타나지만(Crenshaw, 1990) 기존의 젠더레짐이 이 점을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본질주의 접근 비판은 젠더레짐이 단일 인과요소로 환원하는 해석을 피하면서 젠더 관계의 차이를 설명하려 시도를 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확인되는 차이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관찰된 성차를 본질적 차이로 환원해버림으로써 현실을 적확하게 설명하는 이론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Walby, 2004).

월비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고유한 젠더레짐 이론을 발전시켜왔기에 이를 별도로 소개한다. 1989년 출판한 연구에서는 “가부장제를 이론화하기”를 목표로 경제구조 변화, 세계화, 탈산업화에 따른 젠더 관계와 계급 관계의 불균등한 변화를 여성의 생애사(life history) 관점에서 검토한다(Walby, 1989). 여성과 노동시장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여성과 가정(domestic)의 관계와 연결된다. 여성이 시민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제1세대 페미니즘의 성공은 일부 국가에서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의한 여성 노동 수요 증가와 맞물려 여성을 가정 내에 머무르게 만드는 사적(domestic) 젠더레짐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공적(public) 젠더레짐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Walby, 1990). 이렇게 자본주의의 확장과 페미니즘의 성취는 여성의 위치를 (급여와 기간 제한 없이 복무하는) 가정의 부속품에서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공적 노동자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사적 젠더레짐에서 공적 젠더레짐으로의 전환은 근대적 이행을 뜻하지만 반드시 불평등의 감소를 의미하지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여성을 사적 영역인 가정 내에만 머무르게 함으로써 여성을 배제하던 가부장제의 전략은, 점차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분리·종속시켜 시장이 요구하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여성의 종속을 유지·존속하는 전략으로 바뀌어 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이를 보여준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났지만 이는 성별노동분리를 강화로 이어졌다. 정치에서 여성대표성이 강화됐지만 이를 위해 도입한 젠더 할당에는 차별과 혐오, 조직화된 폭력, 그리고 백래시가 따라다니게 되었다. 친밀함이 개인화됐지만 아버지와 남편이 삶을 통제하는 사적 가부장제에서 자본이 여성의 삶을 통제하는 공적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가 규범적으로는 가정폭력을 규제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적 공간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여러 이유로 방치하고, 이와 관련해 불평등을 심화하는 사적 규제와 안보를 위한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월비는 젠더레짐을 네 가지 수준으로 추상화하며 네 층위가 함께 젠더 관계를 구성한다고 본다(Walby, 2004). 첫 번째 차원은 가정에서 공공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을 의미하며 두 번째 차원은 이행 경로, 세 번째 차원은 젠더레짐이 놓여 있는 사회 공간 구분, 네 번째 차원은 사회적 실천을 의미한다. 첫 번째 차원은 가부장제의 변화를 단절적이라기보다는 연속선 상에 놓이는 것으로 보며, 두 번째 차원은 젠더레짐이 이행하는 경로가 시장주도경로(market-led trajectory), 복지국가주도경로(welfare state-led trajectory), 규제적 정치체주도경로(regulatory polity-led trajectory)로 나뉘 볼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세 번째 차원은 사회를 구성하는 세 영역인 경제(economic), 정치체(polity), 시민사회(civil society)로 여기서 정치체는 국민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포함한다. 월비는 이 연구에서는 아직 폭력(violence)을 젠더레짐을 구성하는 사회적 차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부장제를 검토하는 다른 연구들을 통해 폭력과 폭력을 규율하는 제도가 구조로서의 특성을 지니기에 젠더레짐 논의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국가에 독점된 것으로 보기에 너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젠더레짐과 폭력을 결부짓는 사고를 드러낸다.

**[표 2] 월비가 제시한 젠더레짐의 다양성(Variety of gender regime) (Walby, 2020)**

제도 영역	젠더레짐의 다양성			
	사적 domestic		공적 public	
	공적 영역에서 배제 excluded	배제 대신 분리 segregated	신자유주의 불평등이 심하고 민주주의는 얕음	사회민주주의 불평등이 적고, 민주주의는 깊음
경제	가정 내 사적 관계에 의해 여성 생계가 결정됨	자유로운 임금소득을 통한 여성의 생계 유지	노동조건에 대한 규제가 희박	시간의 균형 있고 평등한 사용을 위한 정치체의 규제
정치체	민주적 참여 없음	부분적 민주적 참여	얕은 민주주의, 보편적 투표권 부여	깊은 민주주의, 정치적 관여의 폭과 넓이가 더 깊음
시민 사회	사적영역으로 국한	사사화되지 않음	불평등함. 상품화되고 알뜰함	상호적, 상보적, 두터움
폭력	가정 내 가해자의 폭력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음	국가가 합법적 폭력을 독점	안보국가는 폭력을 범죄로 간주하지만 높은 수준의 폭력이 유지	복지국가는 폭력을 범죄화하며 피해자를 지원함

보다 최근 논의에서 월비는 젠더레짐의 공적 형태를 신자유주의(neoliberal) 유형과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 유형으로 구분, 정식화했다(Walby, 2009). <표 2>는 젠더레짐의 다양성을 네 가지 차원에서 구성하는 월비의 정식화를 번역한 것이다. 경제성장과 동반되는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에서 성평등 강화, 페미니스트-노동 정치 프로젝트에서 권력과 동맹의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젠더레짐의 차이를 설명하고 경제·정치·시민사회·폭력 영역을 각각 젠더 관계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이론틀로 젠더레짐을 정식화한 셈이다. 이를 위해 월비는 젠더레짐의 이행 경로를 설명하는 두 번째 차원을 공적 형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신자유주의 vs 사회민주주의), 세 번째 차원의 공간에 폭력을 더해 네 가지 제도적 영역을 구성하고(국가, 경제, 시민사회, 폭력), 그 전반을 형성하는 주요한 축을 의미하는 불평등 레짐(regime of inequality)으로 젠더, 계급, 민족(ethnicity)<sup>11</sup>을 제안했다.

이 정식화에서 젠더레짐을 구성하는 네 가지 제도 영역 중 하나인 폭력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국민)국가가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한다는 정치학의 오랜 명제<sup>12</sup>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력의 양상과 크기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한국은 다른 고소득국가와 비교해 폭력행위와 이에 이르는 수단을 강하게 규제하는 국가로 지표상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sup>13</sup>. 그러나 2016년 한국 트위터를 뒤덮었던 해시태그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이 보여주듯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폭력 일반과 다른 방식으로 규율된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치와 일정하게 다른 규율이 적용되며, 이는 젠더레짐에서 폭력을 별도의 차원으로 다루는 것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를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텔레그램, 다크웹, 암호화페 등)을 제공하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상품화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이를 젠더레짐의 구성요소로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의 도식을 적용해 보면 한국은

<sup>11</sup> 이론이 구성, 발달해온 맥락을 고려할 때 ‘Race’와의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민족’을 번역어로 사용했다. 한국의 맥락에서 Ethnicity의 번역어로 인종을 택하면 Race와 구분되지 않고 고유한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충분히 담기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민족 또는 민족성을 쓰는 경우에도 Nation과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남고, 이는 한국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더욱 우려되는 지점이지만, Race가 생물학적 함의를 담은 범주인데 반해 Ethnicity는 문화적으로 형성된 집단적 정체성을 이르는 말에 가깝게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sup>12</sup> 베버는 1918년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cs as a Vocation)’을 통해 국가가 “주어진 영토 내에서 합법적인 폭력의 독점권을 (성공적으로) 가지는 공동체(Human community that (successfully) claims the monopoly of the legitimate use of physical force within a given territory)(Weber, 1946:78)”라고 주장했다. 베버의 이와 같은 정의는 향후 정치학, 행정학, 법학 등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두는 다양한 학문에서 폭넓게 응용돼 왔다.

<sup>13</sup> World Population Review, “Gun Deaths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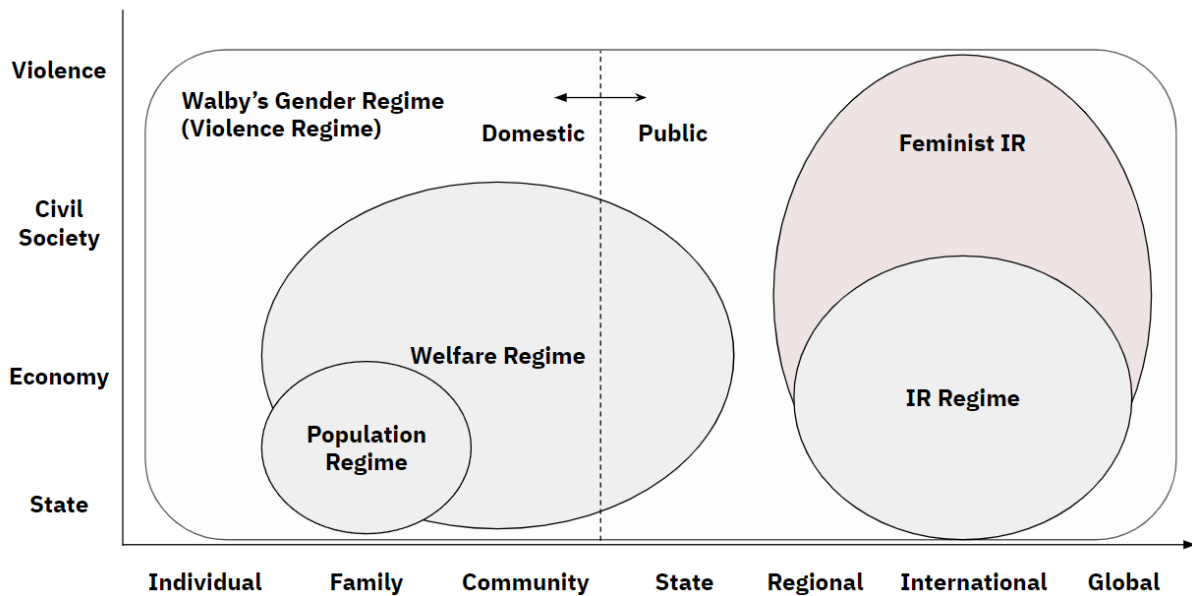
전반적인 상품화의 강도가 높아 인간 일반 역시 상품화돼 있고 정치체와 시민 사회에는 그를 견제할 힘이 충분하지 않은 신자유주의 레짐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높은 강도의 폭력이 만연하고, 국가가 폭력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좁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적 시도 역시 한국 자본주의의 방식으로 상품화됐다는 설명(동영상 삭제 대행 업체 등)을 붙여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젠더레짐을 개념화함으로써 월비는 무엇을 목적으로 했던 걸까? 2015년 출판한 책 「위기(Crisis)」에서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위기」에서 월비는 젠더레짐의 우파적 전환을 다루면서 금융·경제·재정·정치 위기가 폭력, 특히 가정 폭력과 젠더 폭력의 증가로 굴러떨어진다(cascade)는 점에 주목한다. 남성의 얼굴을 한 위기는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의 양상이 변화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폭력을 살피는 것은 젠더레짐의 현재 상태를 살피는 일이 되고, 이는 곧 기존의 경제, 정치체, 시민사회에 더해 폭력을 젠더레짐의 한 차원으로 두는 것의 이론적 장점이 도출된다.<sup>14</sup>

〈그림 3〉은 월비의 젠더레짐을 기존 레짐 논의와 비교하기 위해 도식화를 시도한 것이다. 가로축에 개인(individual)-가족(family)-공동체(communitiy)로 이어지는 사적 레짐에서의 공간 단위, 국가(nation state)-지역(regional)-국제(international)-전지구(global)로 이어지는 공적 레짐에서의 공간 단위를 그 규모에 따라 늘어났다. 세로축에는 월비가 제시한 레짐의 네 가지 제도영역인 국가, 경제, 시민사회, 폭력을 배치했다. 제시된 공간 전체가 월비의 젠더레짐이 다루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기존의 레짐 논의의 평균적인 위치를 배치했다. 우선 인구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려는 인구 레짐(population regime)은 가족 단위에 개입하며 국가와 경제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여성을 가족 안에 종속시키는 사적 레짐에 해당한다. 복지국가 레짐(welfare regime)은 가족을 구성단위로 보며 국가-경제-시민사회의 세

<sup>14</sup> 월비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깊이가 얕아지고, 대신 사회적 위기를 다루기 위한 안보(security)의 중요성이 강화된다고 있다는 현재의 상황은 현대적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Walby, 2015). 우익 포퓰리즘을 포함하는 권위주의적 운동의 증가는 신자유주의의 퇴조로 여겨지곤 하며, 이런 주장은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 갈등적이고 이분법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정 위에서 서 있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하는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라는 개념화는 기존에 불화하는 것처럼 보이던 두 주의(-ism)가 결합해 새로운 시대의 신자유주의를 규정하는 지배적 형태가 됐거나,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Biebricher, 2020; Bruff, 2014). 그러나 폭력을 젠더레짐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는 월비의 도식에서 폭력은 사회통제를 위해 통치체의 작동원리로 내장된 것으로, 신자유주의 이전에도, 신자유주의가 주류이던 시절에도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는 별도로 호명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단절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폭력이 활용되는 제도적 양식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 어떤 레짐에서도 여성들은 진정으로 폭력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축을 고려한다. 여성의 위치를 가족 안에 두는 단일생계부양자모형(single-breadwinner model)에서는 사적 레짐에 더 가깝고, 여성을 새로운 노동자로 보는 이인소득자모형(dual-earner model)에서는 공적 레짐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레짐은 국민국가가 활동하는 지역 이상 수준을 공간적 범위로 하며, 주로 국가와 경제체제(드물게 시민사회)를 이론적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국제정치학의 비주류 분파인 페미니스트 IR은 군사화(militarization)에 대한 명시적 반대를 통해 폭력을 이론적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sup>15</sup>



**[그림 3] 월비의 젠더레짐과 다른 레짐 개념의 비교**

※ Walby(2009)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들이 도식화

월비는 젠더레짐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논의와 비판을 정리하며 향후 검토돼야 할 다섯 가지 논점을 제시했다(Walby, 2020). 첫 번째 논점은 전근대와 근대의 구분이 시공간적으로 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제는 돌봄 노동 그리고 가족과 연결된다. 가정을 전근대로, 공적 영역과 근대를 동치하는 개념화는 가정에서 조직되고 수행되는 돌봄 노동을 전근대의 산물로 여기며 이에 대한 가치절하를 부추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가족은 여성양육자가 체계적으로 돌봄과 양육을 조직화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동시에 근대적인 능력주의(meritocracy)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sup>15</sup> 대표적인 저작으로 Cynthia Enloe 의 <Bananas, Beaches, and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참고.



투자와 경영의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장경섭 외, 2015). 이런 점에서 가정에서 일터로 여성의 위치 이동이 단순히 전근대-근대 도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두 번째는 공적 레짐의 한 형태로 복지국가 유형론에서처럼 보수(conservative) 유형을 추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이 논점은 독일 사례가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유형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월비가 제시했던 젠더레짐의 두 번째 차원(이행경로)에 포함돼 있던 규제적 정치체제도경로를 따르는 독일과 같은 국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비교적 손쉽게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사적 레짐에서 공적 레짐으로의 근대화가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차원과 달리, 독일과 같은 국가는 신자유주의 유형과 사회민주주의 유형 사이의 스펙트럼 위에 올리기 어려운 질적으로 다른 경로를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다루는 형태다.

세 번째는 젠더레짐 안에서 가족과 가정의 위치 문제다.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에서는 흔히 가족을 젠더 관계의 출발점으로 여기는데, 앞서 소개한 비판에서 살펴볼 수 있듯 적어도 현대 사회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젠더 관계는 가족을 넘어 한결 다양한 제도 영역에 걸쳐 있기에 젠더 관계를 재생산하는 가족의 위치와 형태가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이론 안에 어떻게 반영해 낼 것인가가 주요한 논점이 된다. 최근 한국에서 2심 판결이 내려진 동성 부부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 문제는 가족과 젠더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네 번째 논점은 젠더레짐이 다루어지는 공간적 범위의 문제다. 흔히 복지국가 유형론은 국민국가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전과는 다른 공간적 범위의 거버넌스가 젠더레짐에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젠더레짐의 틀을 국소, 국가, 지역, 국제 범위로 구분, 확장하는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유럽의 맥락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정치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 '지역 regional'에 해당하는 범주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 남는다.

마지막 논점은 폭력의 이론화로, 월비의 젠더레짐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다. 이에 대한 학술적 합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을 별도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Moghadam, 2020), 폭력의 범위를 확장해 그 자체로 별도의 레짐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Hearn et al., 2022)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각각의 주장들은 각자 나름의 강점과 약점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월비는 폭력을 제도적 영역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사회 변화에서 폭력의 위치를 이론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때문에 폭력의 개념을 레짐까지 확장하면 권력의 작동에 대한 주목이 흐릿해지면서 폭력 개념의 분석적 힘이 줄어든다고 판단하면서 네 번째 제도적 영역으로 폭력의 위치를 옹호한다.

그렇다면 건강과 연결지어 젠더레짐을 고민하는 우리의 논의에서 월비의 젠더레짐은 어떤 시사점을 가질까? 월비의 이론화를 단순히 복지 레짐에 젠더를 더하거나, 젠더를 중심에 둔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드려는 기획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층위와 목표가 달라보인다. 이보다는 자본주의와 젠더관계 변화가 맞물려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는 기획으로 월비의 젠더레짐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위치, 역할, ‘폭력’이 독점되는 단위의 변화 등 차원을 활용해 사회를 더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너른 시야를 제공하는 사회 이론으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 4. 나가며: 가능성을 모색하기

이 글에서 탐색한 젠더레짐의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국민 국가가 구성 단위로 참여하기에 각국을 귀속하는 명백하고 가시적인 규율이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든 국제정치의 장에서 행동과 그 효과를 통제하는 규범 네트워크의 총체로 레짐을 호명했다. 공공정책 영역에서는 제도를 형성하는 더 넓은 규범과 원칙, 역사문화적 구조와 정치경제의 총체·통합물로 레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 레짐, 젠더(정책)레짐, 돌봄 레짐, 빈곤 레짐, 신자유주의 레짐 등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특정한 시공간의 조직 내에서 나타나는 젠더화된 사회 관계의 양상을 젠더레짐으로 호명한다.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젠더레짐, 폭력 가구 젠더레짐, 전통적 젠더레짐처럼 연구자가 관찰·발견한 젠더화된 규범이나 규율, 이를 재생산하는 제도 등이 특정한 이름이나 수식어를 동반하는 젠더레짐으로 규정되는 방식이 흔하다. 월비는 가장 거시적인 차원에서 젠더레짐을 개념화했다. 여기서 젠더는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축으로 국가, 경제, 시민사회, 폭력의 영역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레짐을 이룬다.

문헌 고찰을 통해 젠더레짐이 정치와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넓은 영역에서 젠더화된 관계와 역할, 규범, 정동 등의 총체로 나타나는 젠더 구조를 사회적 실재로서 포착하고 분석하기 위해 유용한 개념임을 확인했다 판단한다. 법과 제도로 강제되지 않음에도 너무나 많은 제도와 관습들이 유연하면서도 완고하게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음을 떠올려보면, 젠더 구조의 작동을 자연스럽게 레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인즈베리 등 복지레짐에서 출발한 젠더정책레짐 연구자들의 말처럼 정책 레짐 관점을 취함으로써 젠더에 대한 분석이 행태와 개인 수준의 규범을 넘어 정책과 제도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 특정한 젠더 관계를 선택적으로 수용해 이를 제도화하고, 그 제도를 통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젠더 규범을 분배와 정동을 아우르는 넓은 영역에 걸쳐 재생산하는 국가의 작동을 분석하는 데에도 레짐 개념이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인구 감소를 저출산과 연결지으며 결혼하고 아이 낳는 여성과 가족에게 선별적으로 공공정책을 통한 분배의 권리를 부여하는 담론을 출생주의 정책(pronatalist policy)으로 개념화하는 것과 출생주의 레짐(pronatalist regime)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그 쓸모와 효과가 다르다.

지역적·국제적 층위에서 특징적인 여성건강레짐을 구축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비교적 좋은 질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임신과 출산은 “질병이 아니므로 의료보험의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제도가 거의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일본과, 비슷한 논리의 반대가 있었지만 차츰 임신·출산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내에 포함된 한국의 유사성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고소득 국가로 의료접근성이 높고 평균기대여명이 길다. 하지만 내과적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미페프리스톤)이 아직까지도 공식 승인·허가 판매되지 못하고, 임신중지는 남성 파트너의 허락이 필요하다. 두 나라 모두 출산율 감소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깊지만 서구 국가들에 비해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출산율은 매우 낮다.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이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 더 나아가 재생산 권리를 둘러싼 모종의 “레짐”이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임신중지 그 자체에 대한 낙인 수준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지는 커다란 낙인이 되는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문화정치경제 역시 국제적 비교 대조를 통한 분류가 가능할는지 모른다.

이 다음은 더 넓은 틀·관점·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건강 레짐의 활용법을 본받는 시도로 젠더레짐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좀 더 실천적이고 변혁의 주체를 고민하는 여성건강레짐을 개념화·이론화하는 시도도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레짐’ 개념이 이론적 심급으로 그 정의, 범위, 활용이 명확하지 않은데에는 이를 활용해왔던 각각의 학제가 지향하는 바와 레짐 개념을 통해 목표한 바가 서로 달랐다는 맥락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정치학에서의 레짐이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 행위자들을 통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여성학과 사회복지학에서의 레짐은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여성을 비롯한 시민들의 삶을 더 낮게 하려는 일종의 공공재 생산 프로젝트의 성격을 띤다. 다만, 이런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레짐’ 개념의 모호성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데, 이런 애매함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주류 담론으로서 힘과 지위를 얻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점도 짚어둔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이 ‘레짐’ 개념의 모호함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레짐’ 개념이 건강과 보건의료의 점점 더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사안으로 끌려가고 있는 한국에서 ‘모두의 건강과 안녕’이라는 보건학의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자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흡스적 세계관에서 태어난 개념이지만, 여성학, 사회복지학 같은 실천적인 학제의 문제의식을 거치며 현실을 적확하게 진단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개입을 지시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한 과정은 그 자체로 참조의 대상이다. 추상과 이론을 고민하기에는 당장 대응해야 할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요즘이지만, 이들을 아우르는 준거점이자 문제들을 고민함으로써 다종의 문제들을 꿰어 연결하는 연대적 실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고민하는 더 좋은 세계로 향하는 나침반으로 젠더건강레짐에 대해 더 많은 동료들이 함께 관심을 두고 탐색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 부록1. 문헌 목록

### 레짐의 쓸모

- Krasner, S. (1982). Regimes and the limits of realism: Regimes as autonomous variabl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 497-510.  
doi:10.1017/S0020818300019032
- Strange, S. (1982). Cave! hic dragons: A critique of regime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 479-496. doi:10.1017/S0020818300019020
- Aspalter, C. (2011). The development of ideal-typical welfare regime theory. *International Social Work*, 54(6), 735-750.
- Aspalter, C. (2019). Welfare regime analysis: 30 years in the making. *International Social Work*, 62(1), 76-88.
- Brush, L. D. (2002). Changing the subject: Gender and welfare regime studie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9(2), 161-186.
- Haney, L. (2004). Introduction: Gender, welfare, and states of punishment.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11(3), 333-362.
- 김창엽. (2019). 건강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 제7장(공공영역, 공공시스템, 공공생태계)과 제10장(건강레짐)

### 레짐의 정의

- Connell, R. (1987/2013). *Gender and power: Society, the person and sexual politics*. John Wiley & Sons.
- Sainsbury D. (Ed.). (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Walby, S. (2004). The European Union and gender equality: Emergent varieties of gender regime.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11(1), 4-29.
- Walby, S. (2020). Varieties of gender regime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7(3), 414-431.
- Shire, K. A., & Walby, S. (2020). Introduction: advances in theorizing varieties of gender regime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and Society*, 27(3), 409-413.

## 돌봄, 복지, 젠더레짐

- Pease, B. (2011). Men in social work: Challenging or reproducing an unequal gender regime? *Affilia*, 26(4), 406-418.
- Ciccio, R., & Sainsbury, D. (2018). Gendering welfare state analysis: tensions between care and paid work. *European Journal of Politics and Gender*, 1(1-2), 93-109.
- Elomäki, A., Mustosmäki, A., & Sandberg, P. K. (2021). The sidelining of gender equality in a corporatist and knowledge-oriented regime: The case of failed family leave reform in Finland. *Critical Social Policy*, 41(2), 294-314.
- Herlofson, K., & Brandt, M. (2020). Helping older parents in Europe: the importance of grandparenthood, gender and care regime. *European Societies*, 22(3), 390-410.

## 고용, 젠더, 건강

- Bambra, C., Pope, D., Swami, V., Stanistreet, D., Roskam, A., Kunst, A., & Scott-Samuel, A. (2009). Gender, health inequalities and welfare state regimes: a cross-national study of 13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63(1), 38-44.
- Strandh, M., Hammarström, A., Nilsson, K., Nordenmark, M., & Russel, H. (2013). Unemployment, gender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the gender regime.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35(5), 649-665.
- Rodriguez-Loureiro, L., Vives, A., Martínez Franzoni, J., & López-Ruiz, M. (2020). Health inequalities related to informal employment: gender and welfare state variations in the Central American region. *Critical Public Health*, 30(3), 306-318.
- Mensah, A., & Adjei, N. K. (2020). Work-life balance and self-reported health among working adults in Europe: a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 comparative analysis. *BMC Public Health*, 20(1), 1-14.
- Fujishiro, K., Ahonen, E. Q., & Winkler, M. (2021). Poor-quality employment and health: How a welfare regime typology with a gender lens illuminates a different work-health relationship for men and women. *Social Science & Medicine*, 291, 114484.

## 폭력과 젠더

- Morris, A. (2009). Gendered dynamics of abuse and violence in families: Considering the abusive household gender regime. *Child Abuse Review: Journal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18(6), 414-427.
- Hearn, J., Strid, S., Humbert, A. L., Balkmar, D., & Delaunay, M. (2022). From gender regimes to violence regimes: re-thinking the position of violence.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9(2), 682-705.

## 젠더, 국가, 국민주의

- Walby, S. (2006). Gender approaches to nations and nationalism. *The SAGE Handbook of Nations and Nationalism*.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18-128.

## 젠더레짐의 활용(국민국가 단위)

- MacRae, H. (2006). Rescaling gender relations: The influence of European directives on the German gender regime. *Social Politics*, 13(4), 522-550.
- Lombardo, E. (2017). The Spanish gender regime in the EU context: Changes and struggles in times of austerity. *Gender, Work & Organization*, 24(1), 20-33.
- Lombardo, E., & Alonso, A. (2020). Gender regime change in decentralized states: The case of Spain.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7(3), 449-466.
- Dayi, A., & Karakaya, E. (2018). Transforming the gendered regime through reproductive politics: Neoliberal health restructuring, the debt economy and reproductive rights in Turkey. *Les cahiers du CEDREF. Centre d'enseignement, d'études et de recherches pour les études féministes*, (22), 158-192.
- Hoang, L. A. (2020). The Vietnam women's union and the contradictions of a socialist gender regime. *Asian studies review*, 44(2), 297-314.

## 불평등, 젠더, 건강, 돌봄

- Osmani, S., & Sen, A. (2003). The hidden penalties of gender inequality: fetal origins of ill-health. *Economics & Human Biology*, 1(1), 105-121.
- Connell, R. (2012). Gender, health and theory: conceptualizing the issue, in local and world perspective. *Social science & medicine*, 74(11), 1675-1683.
- Pickard, S., & Robinson, J. (2019). *Ageing, the Body and the Gender Regime*. London: Routledge. DOI: <https://doi.org/10.4324/9780429434952>. (Chapter 1,2,5,10)



- del Cid Castro, J. A. The gender regime in politics. Advocacy coalitions strategies in the setting agenda processes in Central America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demand.

### 국내 연구가 다루는 “젠더레짐”

- 원숙연. (2003). 젠더와 국가정책의 역학: 젠더-정책레짐 정립을 위한 이론적 탐색. 한국행정학보, 37(2), 227-242.
- 임춘희와 송인하. (2010). 젠더의 관점에서 본 농촌의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의 문제. 여성연구, 115-153.
- 석재은. (2012). 한국의 연금개혁과 젠더레짐의 궤적: 젠더통합 전략을 통한 젠더평등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28(3), 95-144.
- 김영미와 류연규. (2013). 젠더레짐에 따른 성역할태도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스웨덴, 독일, 한국 비교.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17-1244.
- 김미경. (2015). 젠더질서의 변화와 ‘유연한 젠더레짐: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고. 사회사상과 문화, 18(4), 395-423.
- 박혜영. (2019). 한국정부의 젠더레짐 개선 방안 연구: 과학기술 젠더분석 및 사회적 방법론 적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젠더와사회, 30, 5-28.

## 참고문헌

### 책과 연구

- 김새롬. (2021).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과제: 임신중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5-36.
- 김영미와 류연규. (2013). 젠더레짐에 따른 성역할태도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스웨덴, 독일, 한국 비교.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17-1244.
- 김진환, 김새롬, 박금령, 이준희, 김정우. (2019). 한국 건강정책 지식생산에서 성차: 2000-2017년 3개 학술지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50(1), 5-34.
- 김창엽. (2017).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개념. 대한공공의학회지, 1(1), 65-77.
- 김창엽. (2019). 건강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 파주: 한울엠플러스(주)
- 김희강. (2018). 돌봄: 헌법적 가치. 한국사회정책, 25(2), 3-29.
- 문다슬과 정혜주. (2018). 두 번의 경제위기와 실업, 노동빈곤, 그리고 젠더: 한국 자살 위험양식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시론. 한국사회정책, 25(4), 233-263.
- 문주현과 권순만. (2020). 남성의 양육참여가 유아기 아동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54(1), 139-163.
- 석재은. (2012). 한국의 연금개혁과 젠더레짐의 궤적: 젠더통합 전략을 통한 젠더평등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28(3), 95-144.
- 원숙연. (2003). 젠더와 국가정책의 역학: 젠더-정책레짐 정립을 위한 이론적 탐색. 한국행정학보, 37(2), 227-242.
- 임춘희와 송인하. (2010). 젠더의 관점에서 본 농촌의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의 문제. 여성연구, 115-153.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가족과 문화, 27(3), 1-38.
- 장지연. (2004).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기여와 한계. 한국사회학, 38(3), 177-200.
- 통계청. (2023). 인구주택총조사-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 Axelrod, R., & Keohane, R. 1985.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World Politics. 38(1).
- Biebricher, T. (2020). Neoliberalism and authoritarianism. Global Perspectives, 1(1).

- Bruff, I. (2014). The rise of authoritarian neoliberalism. *Rethinking marxism*, 26(1), 113-129.
- Brush, L. D. (2002). Changing the subject: Gender and welfare regime studie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9(2), 161-186.
- Chung, H., Ng, E., Ibrahim, S., Karlsson, B., Benach, J., Espelt, A., & Muntaner, C. (2013). Welfare state regimes, gender, and depression: a multilevel analysis of middle and high income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0(4), 1324-1341.
- Ciccia, R., & Sainsbury, D. (2018). Gendering welfare state analysis: Tensions between care and paid work. *European Journal of Politics and Gender*, 1(1-2), 93-109.
- Cornell, R., & Pearse, R. (2015). *젠더 (유정미 옮김)*. 서울: 현실문화. Cambridge: Polity.
- Crenshaw, K. (1990).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 L. Rev.*, 43, 1241.
- De Savigny, D., & Adam, T. (Eds.). (2009). *Systems thinking for health systems strengthen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 Dreger, S., Gerlinger, T., & Bolte, G. (2016). Gender inequalities in mental wellbeing in 26 European countries: do welfare regimes matter? *Th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6(5), 872-876.
- Duffield, John S. 2007. "What Are International Institutions." Political Science Faculty Publications. 39. [https://scholarworks.gsu.edu/political\\_science\\_facpub/39](https://scholarworks.gsu.edu/political_science_facpub/39)
- Enloe, C. (2014). *Bananas, beaches and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Univ of California Press.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Polity.
- Guo, J., & Gilbert, N. (2007). Welfare state regimes and family policy: a longitudin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6(4), 307-313.

- Hearn, J., Strid, S., Humbert, A. L., Balkmar, D., & Delaunay, M. (2022). From gender regimes to violence regimes: re-thinking the position of violence.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9(2), 682-705.
- Hernes, H. M., & Hernes, H. (1987). *Welfare state and woman power: Essays in state feminism*.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Hobbes, T. (1969). *Behemoth or the Long Parliament*, Ferdinand Tönnies, ed., with an in-troduction by M. M Goldsmith, London: Frank Cass & Co. Ltd.
- Huber, E., & Stephens, J. D. (2000). Partisan governance, women's employment, and the social democratic service stat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3-342.
- Kardam, N. 2002. The emergence of a global gender equity regime. *International Journal*. 57(3).
- Keohane, Rober O, and Joseph S. Nye.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Boston: Little Brown.
-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1989.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d. R. O. Keohane. Boulder: Westview Press.
- Kim, S., Kim, J. H., Park, Y., Kim, S., & Kim, C. Y. (2020). Gender analysis of COVID-19 outbreak in South Korea: A common challenge and call for action. *Health Education & Behavior*, 47(4), 525-530.
- Krasner, S. D. 1982.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 185-205.
- Lewis, J.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 159-173.
- Lewis, J. (1997). Gender and welfare regimes: further thought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4(2), 160-177.
- Mandel, H., & Semyonov, M. (2006). A welfare state paradox: State interventions and women's employment opportunities in 22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1(6), 1910-1949.

- Weber, M. (1946). "Politics as a vocation." In: Gerth HH and Mills CW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77-128.
- Mennesson, C. (2012). Gender regimes and habitus: An avenue for analyzing gender building in sports contexts. *Sociology of Sport Journal*, 29(1), 4-21.
- Moghadam, V. M. (2020). Gender regim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power of feminist movement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7(3), 467-485.
- Morris, A. (2009). Gendered dynamics of abuse and violence in families: Considering the abusive household gender regime. *Child Abuse Review: Journal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18(6), 414-427.
- Nelson, B. (1990). The origins of the two-channel welfare state: Workmen's compensation and mothers' aid. *Women, the state, and welfare*, 123, 142-45.
- Orloff, A. S.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3-328.
- Orloff, A. S. (2009). Gendering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states: An unfinished agenda. *Sociological theory*, 27(3), 317-343.
- O'connor, J. S. (1993). Gender, class and citizenship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state regime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01-518.
- Padrosa, E., Vanroelen, C., Muntaner, C., Benach, J., & Julià, M. (2022). Precarious 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cross European welfare states: a gender perspective.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95(7), 1463-1480.
- Pickard, S., & Robinson, J. (2019). *Ageing, the Body and the Gender Regime*. London: Routledge.
- Rice, D. (2013). Beyond welfare regimes: from empirical typology to conceptual ideal type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7(1), 93-110.

- Sacks, E., Morrow, M., Story, W. T., Shelley, K. D., Shanklin, D., Rahimtoola, M., ... & Sarriot, E. (2019). Beyond the building blocks: integrating community roles into health systems frameworks to achieve health for all. *BMJ global health*, 3(Suppl 3), e001384.
- Sainsbury, D. (Ed.). (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Strange, S. (1982). Cave! hic dragones: a critique of regime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 479-496.
- Walby, S. (1989). Labour markets and industrial structures in women's working lives. *The Sociological Review*, 37(1\_suppl), 167-186.
- Walby, S. (1989). Theorising patriarchy. *Sociology*, 23(2), 213-234.
- Walby, S. (1990, January). From private to public patriarchy: the periodisation of British history. I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13, No. 1-2, pp. 91-104). Pergamon.
- Walby, S. (2004). The European Union and gender equality: Emergent varieties of gender regime.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11(1), 4-29
- Walby, S. (2015). *Crisis*. John Wiley & Sons.
- Walby, S. (2020). Varieties of gender regime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7(3), 414-431.
- Weber, M. (1948). *Politics as a Vocation and Science as a Vocation*. From Max Weber,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77-156.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Everybody's business -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to improve health outcomes : WHO's framework for ac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43918>
- Wilson, E. (2002). *Women and the welfare state*. Routledge.
- Young, O. R. (1980). International regimes: Problems of concept formation. *World Politics*, 32(3), 331-356.
- Young, O. R. (1982). Regime dynamics: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 277-297.

## 웹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건강보험통계연보.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20000&brdScnBltno=4&brdBltno=2312&pageIndex=1&pageIndex2=1#none> (검색일: 2023.03.09)

통계청.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vw\\_cd=MT\\_ZTITLE&list\\_id=B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vw_cd=MT_ZTITLE&list_id=B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검색일: 2023.03.09)

e-나라지표. (2023). 인구총조사 -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7)  
(검색일: 2023.03.09)

UN Women, “World Conferences on Women,” <https://www.unwomen.org/en/how-we-work/intergovernmental-support/world-conferences-on-women>

(검색일: 2023.01.04)

ILO, “C004 - Night Work (Women) Convention, 1919 (No. 4),”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C004](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C004) (검색일: 2023.01.04)

Council of Europe, “Key facts about the Istanbul Convention,”

<https://www.coe.int/en/web/istanbul-convention/key-facts> (검색일: 2023.01.04)

World Population Review, “Gun Deaths by Country,”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gun-deaths-by-country>  
(검색일: 2023.03.10)

한겨레(2016.11.01.) 사회보험도 없는 비정규직 499만, 그들은 누구인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8280.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8280.html)  
(검색일: 2023.03.12)



**시민건강연구소**

PEOPLE'S HEALTH INSTITUTE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3길 36, 2층

전화: 02-535-1848

팩스: 02-581-0339

누리집: <http://health.re.kr>

전자우편: [people@health.re.kr](mailto:people@health.re.kr)

후원계좌: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연구소

(사) 시민건강연구소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